

6·25전쟁 납북자 신고

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

가슴에 묻은 세월만큼
큰 희망을 얻었어요!

6·25전쟁 납북 신고서

2014년
12월말까지
기한 연장

6·25전쟁 납북자 신고 ‘명예회복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

쉽고 편한 신고절차

- 신고대상 : 6·25전쟁 중 (1950.6.25 ~ 1953.7.27)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(군인제외)
- 신고자격 : 6·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
- 신고방법 : 신고인의 거주지 시·군·구청(국외는 재외공관) 방문 신고
- 구비서류 : 납북피해 신고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납북경위서,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

6·25전쟁 납북자 가족 무료법률 지원

- 기간 : 2014.1.1 ~ 위원회 존속 기간까지
- 대상 : 6·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
- 내용 : 6·25전쟁 납북자 「실종신고 심판청구」 또는 「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」 (구. 호적정리) 가능

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 (전국 어디서나)



국무총리소속
6·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

문의전화 1661-6250